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사회보험료 지원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부여군, 서천군, 홍성군

내 용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,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,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에 해당 되는 종사자에게 기관부담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(2015. 01 ~ 2017. 10.) 실태를 확인한 결과, ‘○○○○○’ 등 11개 사회복지시설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종사자인 ○○○ 등 14명의 촉탁의사에게 기관부담금 23,279,000원¹⁾을 지원하였다.

1)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2개 노인요양시설 기관부담금(1,947,960원) 포함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축탁의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,757,450원을 환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공주시장은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축탁의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0,888,800원을 환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보령시장은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축탁의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,274,230원을 환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아산시장은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축탁의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,716,660원을 환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부여군수는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축탁의사에게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779,160원을 시설회계 장기요양비용 계좌로 반환하고,

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서천군수는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촉탁의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,693,900원을 환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홍성군수는

[시정]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촉탁의사에게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지원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,168,800원을 시설회계 장기요양비용 계좌로 반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